

명예직에 관한 규정

2017.09.01.제정

<교무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발전과 국제교류, 취업, 산학협력, 대학홍보에 기여할 인사를 본 대학교의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호의 명예직위에 관하여 적용한다.

1. 명예부총장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명예직이라 함은 대학의 국제화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제4조(위촉) ① 명예직에 추천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명예직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임무) ① 명예직에 위촉된 자는 대학발전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.

- ② 명예직에 위촉된 자는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(예우) 명예직에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직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촉취소) 명예직에 위촉된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